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KTB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KTB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TB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 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 준 일 : 2013년 8월 2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8월 2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88-8400, www.i-ktb.com)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목차

| | |
|--|----|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5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
| 3. 모집예정금액 | |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5. 인수에 관한 사항 | |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6 |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
| 4. 집합투자업자 | |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26 |
| 1. 재무정보 | |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30 |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 |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

| | |
|---------------------------------|----|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35 |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 칭 | KTB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4581) | | | | | |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C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종류CP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94582 | 94583 | 94585 | 94586 | 94587 | 94584 | 94963 | 18625 | 18627 | 98842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능)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자금 납입가능)
- 마. 특수형태 :
- (1)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 (2)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ktb.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 | | | | | | | |
|-------------|-----------------------------|-------|-------|-------|-------|-------|-------|-------|-------|-------|
| 명 칭 | KTB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94581) | | | | | | | | | |
| 종류(클래스) | 종류A | 종류C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종류CP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94582 | 94583 | 94585 | 94586 | 94587 | 94584 | 94963 | 18625 | 18627 | 98842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변경 사항 |
|------------|-----------------------------------|
| 2009.07.17 | 최초설정 |
| 2009.11.09 | 위탁운용사 변경(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신영자산운용) |
| 2009.12.15 | 클래스 신설(종류 CF, 종류 CW) |
| 2010.05.03 | 판매회사보수 인하 |
| 2010.08.25 | 위탁운용사 변경(유리자산운용 -> KB자산운용) |
| 2010.09.06 | 판매회사보수 인하 |
| 2010.12.21 | 클래스 신설(종류 CP) |
| 2013.04.08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 2013.08.28 | 모투자신탁의 위탁운용사 변경(KB자산운용 -> 한화자산운용)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이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 사 명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한국금융투자협회빌딩 (대표전화 : 02-788-84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의 운용(지시)업무 일부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지시)업무 일부를 아래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KTB자산운용(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업무를 위탁 받는 집합투자업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당 펀드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업무를 위탁 받는 집합투자업자 | 주소 및 연락처 | 위탁 업무 |
|---------------------|---|---------------------------------|
| 신영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번지 신영빌딩 6층 (대표전화 : 02-2004-9500) | - 운용 및 운용지시 - 운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 한화자산운용(주)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 63 50~52층 (대표전화 : 02-6950-0000) | - 운용에 부수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기타 업무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2013.07.31 현재) | | | | | |
|---|------|----|---------------------|---------------|---|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
| | |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이승준 | 45 세 | 상무 | 5개 | 5,061억 | - '10.04~'12.05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 - '12.06~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총괄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 | | |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13.07.31 현재) | | | | | |
| 성명 | 나이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
| | | |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곽재우 | 36 세 | 차장 | 4개 | 442억 | - '05.12~'12.08 하이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12.08~현재 KTB 자산운용 주식운용 1 팀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 | | | |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책임운용전문인력 | 구분 | 운용 기간 |
|-----------|------|-------------------------------|
| 안영희 | 주식부문 | 2009년 07월 17일 ~ 2012년 10월 15일 |
| 이동진 | | 2012년 10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 |
| 이승준 | | 2013년 01월 01일 ~ 현재 |
| 김정희 | 채권부문 | 2009년 07월 17일 ~ 2012년 10월 15일 |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구분 | 운용 기간 |
| 곽재우 | 주식부문 | 2012년 10월 16일 ~ 현재 |

▣ 모투자신탁의 업무를 위탁 받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해당 펀드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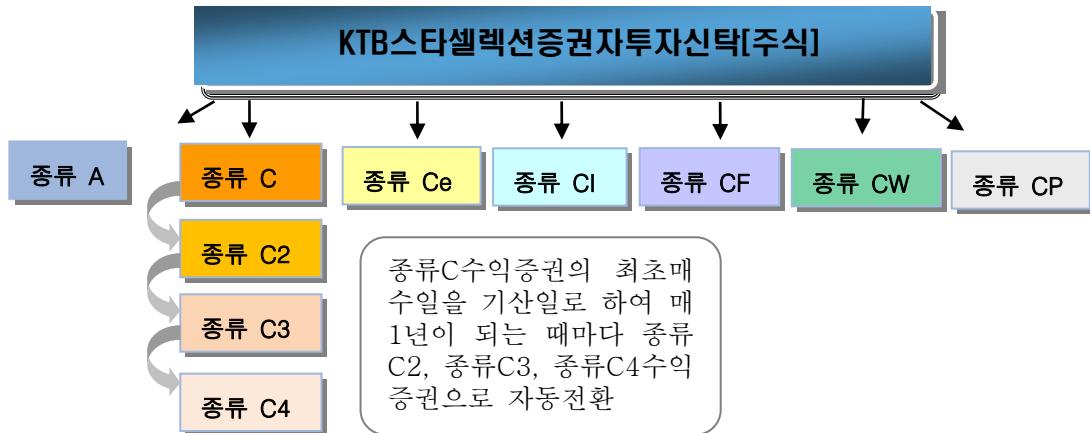
| 성명 | 직위 | 주요 운용 경력 및 이력 |
|-----|-----|--|
| 허남권 | 본부장 | - 신영증권 상품운용부 -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상무 - 대표펀드 : 신영마라톤주식 |
| 이해진 | 상 무 | - 미래에셋자산운용 Wrap 운용 - 하나대투증권 주식운용 -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총괄 - 한화자산운용 Equity 운용팀장 - 대표펀드 : 한화 Value 포커스주식 |

주) 이 투자신탁은 각 펀드매니저의 대표펀드와 동일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 이 투자신탁은 2013년 4월 8일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발행된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변경된 투자신탁의 해당 종류형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됩니다.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별 | 가입자격 |
|-------|--|
| 종류 A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 | 50 억원 미만을 납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2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3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4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e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I | 50 억원 이상을 납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F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종류 C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 종류 C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보수 및 수수료 차이>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율 | | | | | | | | | | 지급 시기 |
|---------|----------------|---------|------|------|------|------|------|------|------|------|-------|
| | 종류A | 종류C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종류CP |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 | | | | | | | 환매시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보수 | 보수합계 |
| 종류A | | 0.70 | | | 1.43 |
| 종류C | | 1.50 | | | 2.23 |
| 종류C2 | | 1.39 | | | 2.12 |
| 종류C3 | | 1.25 | | | 1.98 |
| 종류C4 | | 1.00 | | | 1.73 |
| 종류Ce | 최초설정일~2010.09.05 | 0.66 | 1.23 | 0.04 | 1.96 |
| | 2010.09.06~2011.09.05 | | 1.148 | 0.03 | 1.878 |
| | 2011.09.06~2012.09.05 | | 1.065 | | 1.795 |
| | 2012.09.06~2013.09.05 | | 0.983 | | 1.713 |
| | 2013.09.06~신탁계약해지 | | 0.90 | | 1.63 |
| 종류 CI | | 0.20 | | | 0.93 |
| 종류 CF | | 0.03 | | | 0.76 |
| 종류 CW | | 0.0 | | | 0.73 |
| 종류 CP | | 0.47 | | | 1.20 |

주)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 및 당해 모두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투자신탁명 | 모투자신탁명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KTB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90% 이상 |
| KTB스타셀렉션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50% 이상 ~ 60% 이하 |
| KTB스타셀렉션법인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30% 이하 |

<01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에 관한 사항>

| 모투자신탁명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KTB스타셀렉션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p><주요 투자대상> 주식에 60% 이상, 채권에 40% 이하</p> <p><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가. 각 스타일, 투자전략 별로 우수한 집합투자업자와 운용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하고, 상관관계를 고려한 투자전략별 투자비중 조정으로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위험은 줄이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p> <p>나. 매분기 전문펀드투자자문회사인 마루투자자문의 자문을 기초로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시장전망을 통하여 정률법 및 적극적 Rebalancing 방법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Rebalancing을 실행할 계획</p>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 투자대상 종류 | | 투자한도 | 투자대상 조건 |
|---|---------------------|------------------------------------|---|
| ① |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90% 이상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② |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10% 이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및 만기 1년 이내인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 ① 및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

(1)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종류 | | 투자한도 | 투자대상 조건 |
|---------|---------|--|--|
| ① | 주식 | 60% 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비율 60% 이상) | 지분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식에 한한다)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② | 채권 | 40% 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 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③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 | | |
|--|-----------------------------|-------------------|---|
| ④ | 집합투자증권등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 | 5% 이하 (30%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⑤ | 환매조건부매도 |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⑥ | 증권 대여 | 50% 이하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
| ⑦ | 증권 차입 | 20% 이하 |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에 의한 차입허용 |
|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1. 단기대출(법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 | |
| ① 내지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내지 ③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 |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법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투자대상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제한>

(1)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투자대상 종류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예외 |
|--------------|--|---------------|
| ①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
| ② 동일종목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 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 가능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 ③ | 동일법인 발행지분증권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④ |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0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⑤ | 계열회사 지분증권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⑥ | 후순위채권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
| 투자한도 초과 | <p>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④ 내지 ⑦, ‘나. 투자제한’ ② 및 ③, ④의 ⑤, 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 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은 ‘나. 투자 제한’ 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
|---------|--|

주)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과비교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한국종합주가지수 × 100%

나.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개별적 위험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인 위험 관리를 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 대상인 국내 주식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명 | 투자대상 |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
| KTB스타셀렉션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p>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p> | <p><주요투자전략></p> <p>(1) 각 스타일, 투자전략 별로 우수한 집합투자업자와 운용업무 위탁계약을 통하여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하고, 상관관계를 고려한 투자전략별 투자비중 조정으로 일반 주식형 펀드 대비 위험은 줄이면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p> |

KTB스타셀렉션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 ① 전문펀드투자자문회사[(주)마루투자자문] Know-How 를 활용하여 국내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집합투자업자(우수한 펀드매니저)를 선정

-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대상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성과 및 운용능력 분석
-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장기 안정적 운용 가능성 등을 판단



- ② 과거 경기 및 주식시장 사이클의 국면별 분석과 향후 전망에 따라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수익추구

<스타일별 집합투자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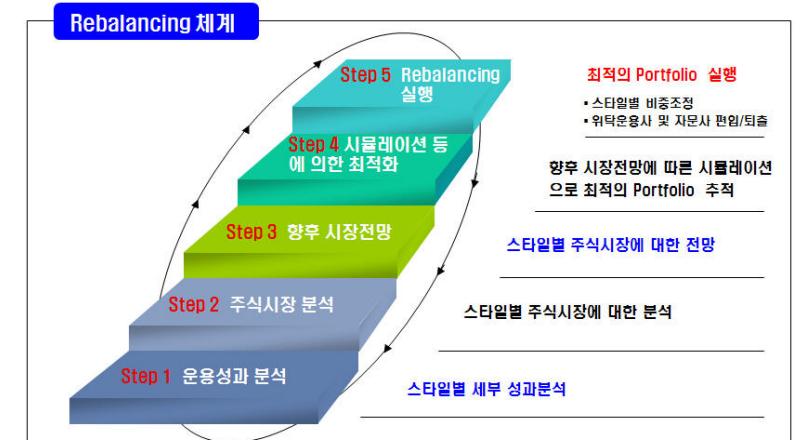
| 구분 | 스타일별 매니저 |
|-----------------|-----------------------------------|
| 대형혼합/ 성장 주식형 | KTB자산운용 (대형성장주식형 자문 : 브레인자산운용) |
| 대형가치 주식형 | 신영자산운용 |
| 중소형가치 주식형 | 한화자산운용 |

* 대형성장 주식형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 중 일부를 자산운용회사인 브레인자산운용(주)를 통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등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아 펀드운용의 시너지 효과 추구

- ③ 상관관계를 고려한 스타일별 최적의 Portfolio 구축으로 분산 투자효과 극대화

- ④ 전문펀드투자자문회사[(주)마루투자자문]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시장전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Rebalancing 실행

* Rebalancing : 정기적으로 향후 시장전망 및 운용성과 등에 따라 스타일별 비중을 최적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



| | <p>(2) 우량 채권등에 투자하여 채권의 투자에 따르는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p> <p><위험관리></p> <p>(1) 매분기 전문펀드투자자문회사인 마루투자자문의 자문을 기초로 체계적인 성과분석 및 시장전망을 통하여 정률법 및 적극적 Rebalancing 방법을 결합하여 효율적인 Rebalancing을 실행할 계획</p> <p><Rebalancing 실행 방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정률법</td><td>분기별로 특정스타일에 대한 기준비중을 설정하여 리밸런싱시 기준비중으로 회귀하도록 비중 조정</td></tr> <tr> <td>적극적 Rebalancing</td><td>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별 기준비중에 상하 변동폭을 설정하여 비중 조정</td></tr> </tbody> </table> <p>(2) 업무를 위탁 받는 집합투자업자의 주요관리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매니저의 퇴직 등 매니저의 변경 - 운용 중 사전 계획된 운용스타일/전략에서의 현격한 이탈 - 운용사 지배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운용철학 및 운용프로세스상의 변동 발생시 - 운용 중 컴플라이언스 상 심각한 위반 발생 시 - 시장의 동일전략 펀드들에 비해 장기간 운용성과 저조 시 <p>* 담당매니저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신규추가와 퇴출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 시 변경 등록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p> | 구분 | 내용 | 정률법 | 분기별로 특정스타일에 대한 기준비중을 설정하여 리밸런싱시 기준비중으로 회귀하도록 비중 조정 | 적극적 Rebalancing |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별 기준비중에 상하 변동폭을 설정하여 비중 조정 |
|-----------------|---|----|----|-----|--|-----------------|---------------------------------------|
| 구분 | 내용 | | | | | | |
| 정률법 | 분기별로 특정스타일에 대한 기준비중을 설정하여 리밸런싱시 기준비중으로 회귀하도록 비중 조정 | | | | | | |
| 적극적 Rebalancing |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별 기준비중에 상하 변동폭을 설정하여 비중 조정 | | | | | |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
|------------|---|
| 금리 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정치·경제적 상황, 정부정책, 과세제도 등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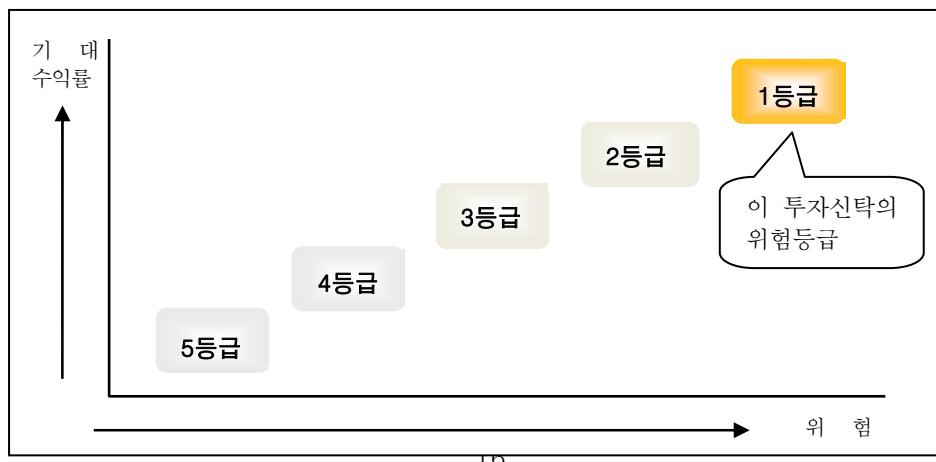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기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 환매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 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하므로, 시장변동에 따라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매우 높은 1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시장금리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KTB자산운용회사의 투자위험등급 기준>

| | | |
|-----|-------------|--|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해지목적거래인 경우와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실질적으로 담보나 지급보증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2등급 | 높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60%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부적격회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상가, 물류센터 등 사용 목적이 특정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담보나 지급보증이 불충분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3등급 | 중간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을 기초자산이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지목적거래인 경우, 차익거래인 경우 및 투기목적거래가 자산총액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1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오피스 등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로 투자회수가 용이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4등급 |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적격채권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원금보존 ELS 포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원금보전형 파생결합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경우 - 부동산에 투자(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대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투자적격회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 보증하거나 담보가 충분하여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회사가 지급보증과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 등급의 부동산에 투자의 경우를 준용 한다) - 이 등급 각각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 투자하는 경우 |
|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유동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 |

주) 위의 투자위험등급 기준은 KTB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으로서 투자자가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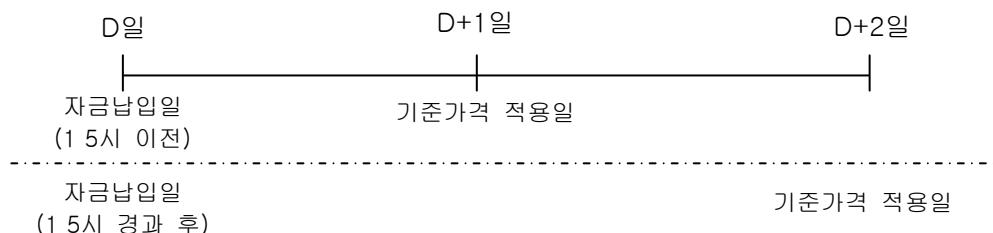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별 | 펀드코드 | 가입자격 |
|-------|-------|---|
| 종류 A | 94582 | 가입제한 없음 |
| 종류 C | 94583 | 50 억원 미만을 납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2 | 94585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3 | 94586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4 | 94587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 이상된 수익자 |
| 종류 Ce | 94584 |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I | 94963 | 50 억원 이상을 납입하는 투자자 |
| 종류 CF | 18625 |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 10조제 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 종류 CW | 18627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
| 종류 CP | 9884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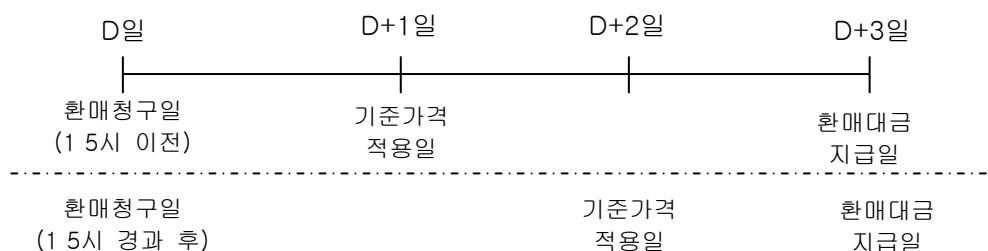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나) 1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잦은 자금유출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환매청구에 따라 보유 증권 등을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잔류 수익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으로 편입됩니다.

| 구 분 | 지급비율 | | | | | | | | | | 지급시기 |
|----------------------------------|-------------------|-----|------|------|------|------|------|------|------|------|------|
| | 종류A | 종류C | 종류C2 | 종류C3 | 종류C4 | 종류Ce | 종류CI | 종류CF | 종류CW | 종류CP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 | | | | | | | | 환매시 |

주) 1.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한 경우에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촉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촉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관련법령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관련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합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장기투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①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C 수익증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 |
|------------|--|
| 종류 C 수익증권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1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
| 종류 C2 수익증권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2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
| 종류 C3 수익증권 | 종류 C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3년이 되는 때에는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 종류 C4 수익증권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 또는 환매 대금지급일 등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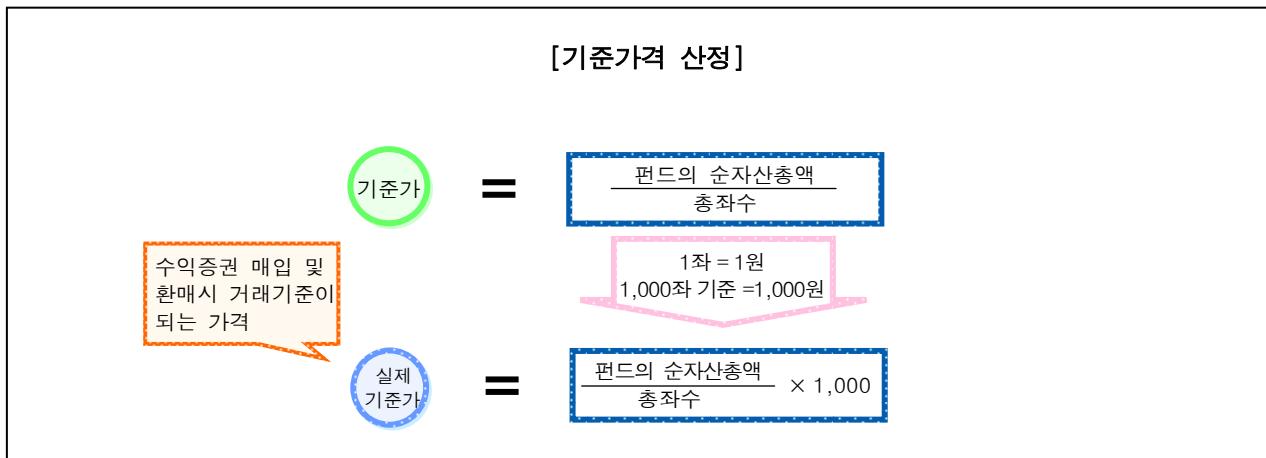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합니다. |
|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종류 수익증권 간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ktb.com),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홈페이지 |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경우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가 이루어지며, 모두자신탁의 경우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가 없으므로 자투자신탁과 기준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비용 및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기타비용등이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위의 상장채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함)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주)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경우도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율 | | | | | | | | | 지급 시기 | |
|---------|----------------|---------|-------|-------|-------|-------|-------|-------|-------|-------|-----|
| | 종류 A | 종류 C | 종류 C2 | 종류 C3 | 종류 C4 | 종류 Ce | 종류 CI | 종류 CF | 종류 CW | 종류 CP |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1%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 | | | | | | 환매시 | |

주) 1. 환매수수료 부과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2. 신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보수 | 기타 비용 | 총보수 및 비용 | 증권 거래비용 |
| 종류A | | 0.70 | | | 0.012 | 1.442 | 0.474 |
| 종류C | | 1.50 | | | 0.012 | 2.242 | 0.474 |
| 종류C2 | | 1.39 | | | 0.012 | 2.132 | 0.474 |
| 종류C3 | | 1.25 | | | 0.012 | 1.992 | 0.474 |
| 종류C4 | | 1.00 | | | 0.012 | 1.742 | 0.474 |
| 종류Ce | 최초설정일~2010.09.05 | 1.230 | | | 0.012 | 1.972 | |
| | 2010.09.06~2011.09.05 | 1.148 | | | 0.012 | 1.890 | |
| | 2011.09.06~2012.09.05 | 1.065 | | | 0.012 | 1.807 | 0.474 |
| | 2012.09.06~2013.09.05 | 0.983 | | | 0.012 | 1.725 | |
| | 2013.09.06~신탁계약해지 | 0.90 | | | 0.012 | 1.642 | |
| 종류 CI | | 0.20 | | | 0.012 | 0.942 | 0.474 |
| 종류 CF | | 0.03 | | | 0.012 | 0.772 | 0.474 |
| 종류 CW | | 0.0 | | | 0.012 | 0.742 | 0.474 |
| 종류 CP | | 0.47 | | | 0.012 | 1.212 | 0.474 |
| 지급시기 | | 매3개월 후급 | |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접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접 회계기간의 수치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5. 미설정된 클래스의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종류C의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원)

| 구 분 | 1 년 | 3 년 | 5 년 | 10 년 |
|------|---------|---------|---------|-----------|
| 종류 A | 245,298 | 551,473 | 879,660 | 1,806,007 |

| | | | | |
|-------|---------|---------|-----------|-----------|
| 종류 C | 227,291 | 663,048 | 1,054,458 | 2,147,919 |
| 종류 Ce | 175,324 | 525,820 | 900,051 | 1,949,118 |
| 종류 CI | 96,113 | 300,141 | 520,983 | 1,155,174 |
| 종류 CF | 78,834 | 246,602 | 428,800 | 955,095 |
| 종류 CW | 75,782 | 237,126 | 412,449 | 919,413 |
| 종류 CP | 123,497 | 384,614 | 665,764 | 1,465,655 |

- 주) 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총보수·총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보수·총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 C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매1년이 되는 때마다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됨에 따라 수익자가 종류C 수익증권을 4년 이상 보유한것으로 가정하여 각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종류 Ce는 '12.09.06일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판매회사보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4. 종류 A 와 종류 C 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5 개월~16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현황>

(단위 : %)

| 자펀드명 | 집합투자 업자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 관리 보수 | 합계 |
|---------------------------|--------------|------------|------------|---------------|------|
| KTB스타셀렉션6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A | 0.43 | 0.70 | 0.03 | 0.02 |
| | Ae | 0.43 | 0.35 | 0.03 | 0.02 |
| | C | 0.43 | 1.00 | 0.03 | 0.02 |
| | Ce | 0.43 | 0.50 | 0.03 | 0.02 |
| | C-P | 0.43 | 0.90 | 0.03 | 0.02 |
| KTB스타셀렉션법인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A | 0.35 | 0.50 | 0.03 | 0.02 |
| | C | 0.35 | 0.80 | 0.03 | 0.02 |
| | CI | 0.35 | 0.20 | 0.03 | 0.02 |

주)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1)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익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2) 또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이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와 투자신탁에서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에서 투자해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는 과표기준가격률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2기, 제3기 및 제4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대차대조표 | | | |
|----------|---------------------|---------------------|---------------------|
| 항 목 | 제4기 (2013.07.16) | 제3기 (2012.07.16) | 제2기 (2011.07.16) |
| 운용자산 | 27,016 | 21,851 | 26,836 |
| 증권 | 26,763 | 20,344 | 25,740 |
|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현금및예치금 | 253 | 1,507 | 1,096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기타자산 | 3 | 893 | 1,583 |
| 자산총계 | 27,019 | 22,745 | 28,419 |
| 운용부채 | - | - | - |
| 기타부채 | 620 | 763 | 6,524 |
| 부채총계 | 620 | 763 | 6,524 |
| 원본 | 27,685 | 25,811 | 21,895 |
| 이익잉여금 | -1,287 | -3,830 | 0 |
| 자본총계 | 26,398 | 21,982 | 21,895 |

손익계산서

| 항 목 | 제4기 (2012.07.17~2013.07.16) | 제3기 (2011.07.17~2012.07.16) | 제2기 (2010.07.17~2011.07.16) |
|------------|--------------------------------|--------------------------------|--------------------------------|
| 운용수익 | 2,528 | -3,431 | 5,092 |
| 이자수익 | 25 | 46 | 27 |
| 배당수익 | 230 | 276 | 310 |
| 매매/평가이익(손) | 2,266 | -3,762 | 5,538 |
| 기타수익 | 7 | 9 | 27 |
| 운용비용 | 363 | 396 | 400 |
| 관련회사보수 | 361 | 394 | 398 |
| 매매수수료 | - | - | - |
| 기타비용 | 2 | 2 | 2 |
| 당기순이익 | 2,165 | -3,827 | 5,502 |
| 매매회전율 | 392.78 | 312.33 | 527.8 |

주)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 구분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 중 | | | | 기간말 잔고 | |
|------|---------------------------|--------|----|--------|-----|-----|-----|--------|----|
| | | | | 설정 | | 환매 | | | |
| |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좌수 | 금액 |
| 종류A | 2010/07/17~ 2011/07/16 | 39 | 50 | 37 | 41 | 37 | 42 | 39 | 50 |
| | 2011/07/17~ 2012/07/16 | 39 | 50 | 22 | 21 | 25 | 22 | 37 | 31 |
| | 2012/07/17~ 2013/07/16 | 37 | 31 | 18 | 18 | 18 | 17 | 37 | 35 |
| 종류C | 2010/07/17~ 2011/07/16 | 63 | 80 | 62 | 68 | 101 | 108 | 24 | 30 |
| | 2011/07/17~ 2012/07/16 | 24 | 30 | 28 | 26 | 45 | 40 | 7 | 6 |
| | 2012/07/17~ 2013/07/16 | 7 | 6 | 31 | 30 | 14 | 13 | 25 | 23 |
| 종류C2 | 2010/07/19~ 2011/07/16 | 3 | 3 | 105 | 114 | 38 | 44 | 70 | 88 |
| | 2011/07/17~ 2012/07/16 | 70 | 88 | 66 | 61 | 102 | 93 | 34 | 29 |
| | 2012/07/17~ 2013/07/16 | 34 | 29 | 15 | 14 | 42 | 40 | 7 | 6 |
| 종류C3 | 2011/07/19~ 2012/07/16 | 2 | 2 | 109 | 99 | 33 | 30 | 78 | 66 |
| | 2012/07/17~ 2013/07/16 | 78 | 66 | 36 | 35 | 89 | 81 | 26 | 24 |
| 종류C4 | 2012/07/17~ 2013/07/16 | 1 | 1 | 73 | 78 | 22 | 24 | 52 | 57 |
| 종류CF | 2010/07/17~ 2011/07/16 | 48 | 51 | 15 | 17 | 28 | 32 | 35 | 45 |
| | 2011/07/17~ 2012/07/16 | 35 | 45 | 10 | 10 | 3 | 2 | 42 | 36 |
| | 2012/07/17~ 2013/07/16 | 42 | 36 | 51 | 50 | 11 | 11 | 82 | 78 |
| 종류CP | 2011/01/04~ 2011/07/16 | 13 | 13 | 0 | 0 | 0 | 0 | 13 | 14 |
| | 2011/07/17~ 2012/07/16 | 13 | 14 | 5 | 4 | 5 | 5 | 13 | 11 |
| | 2012/07/17~ 2013/07/16 | 13 | 11 | 5 | 5 | 10 | 9 | 8 | 7 |
| 종류Ce | 2010/07/17~ 2011/07/16 | 25 | 33 | 23 | 25 | 11 | 12 | 37 | 47 |
| | 2011/07/17~ 2012/07/16 | 37 | 47 | 21 | 20 | 11 | 10 | 47 | 40 |
| | 2012/07/17~ 2013/07/16 | 47 | 40 | 8 | 7 | 14 | 13 | 41 | 39 |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당해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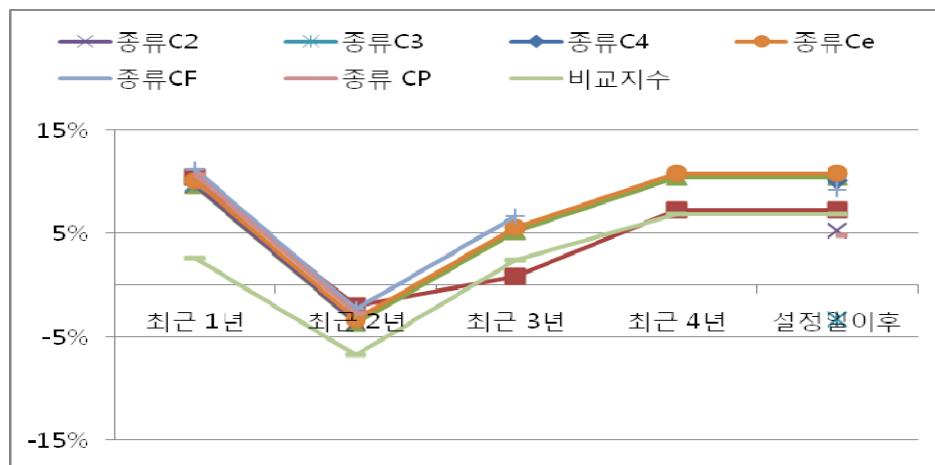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기간 | 최근 1년 (12.07.17~ 13.07.16) | 최근 2년 (11.07.17~ 13.07.16) | 최근 3년 (10.07.17~ 13.07.16) | 최근 4년 (09.07.17~ 13.07.16) | 설정일 이후 |
|-------|----------------------------------|----------------------------------|----------------------------------|----------------------------------|--------|
| 종류 A | 10.47% | -1.97% | 0.89% | 7.22% | 7.22% |
| 종류 C | 9.60% | -3.72% | 5.19% | 10.40% | 10.40% |
| 종류 C2 | 9.71% | -3.61% | - | - | 5.30% |
| 종류 C3 | 9.88% | - | - | - | -3.32% |
| 종류 C4 | 10.14% | - | - | - | 10.14% |
| 종류 Ce | 10.15% | -3.26% | 5.63% | 10.83% | 10.83% |
| 종류 CF | 11.21% | -2.28% | 6.72% | - | 9.24% |
| 종류 CP | 10.73% | -2.71% | - | - | 4.75% |
| 비교지수 | 2.67% | -6.72% | 2.40% | 6.84% | 6.84% |

주) 1.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상승률 ×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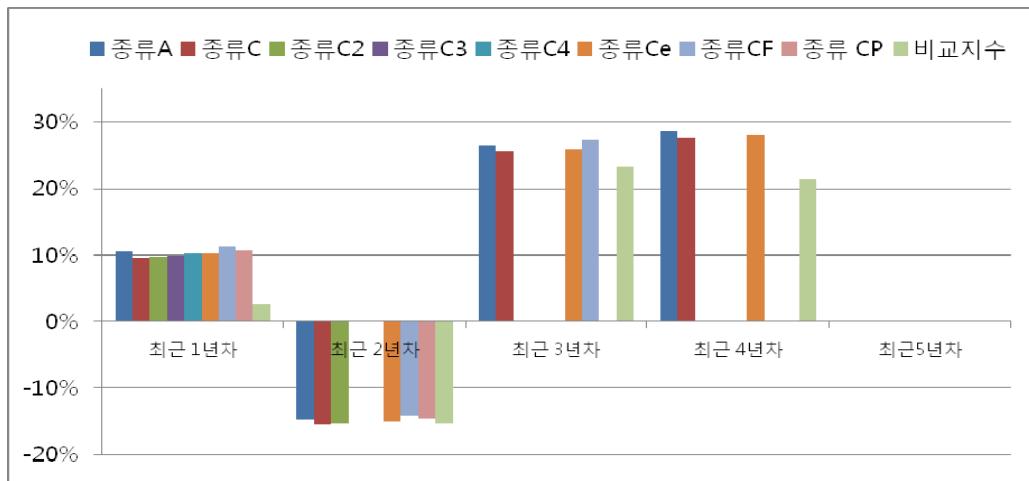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 기간 | 최근 1년 (12.07.17~ 13.07.16) | 최근 2년차 (11.07.17~ 12.07.16) | 최근 3년차 (10.07.17~ 11.07.16) | 최근 4년차 (09.07.17~ 10.07.16) | 최근 5년차 |
|-------|----------------------------------|-----------------------------------|-----------------------------------|-----------------------------------|--------|
| 종류 A | 10.47% | -14.72% | 26.48% | 28.68% | - |
| 종류 C | 9.60% | -15.42% | 25.55% | 27.64% | - |
| 종류 C2 | 9.71% | -15.31% | - | - | - |
| 종류 C3 | 9.88% | - | - | - | - |
| 종류 C4 | 10.14% | - | - | - | - |
| 종류 Ce | 10.15% | -15.04% | 25.93% | 28.03% | - |
| 종류 CF | 11.21% | -14.14% | 27.30% | - | - |
| 종류 CP | 10.73% | -14.52% | - | - | - |
| 비교지수 | 2.67% | -15.26% | 23.40% | 21.38% | - |

주) 1. 비교지수 : 한국종합주가지수 상승률 × 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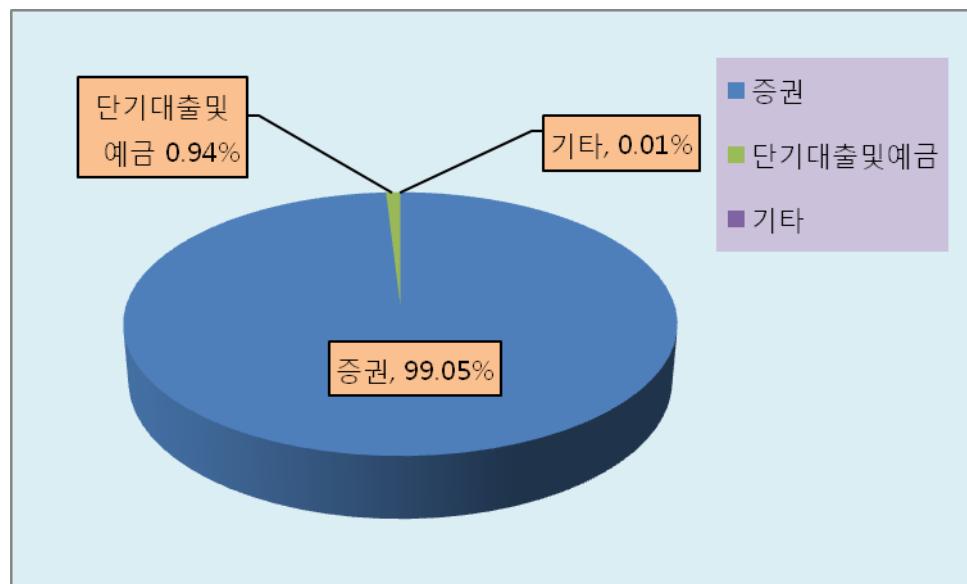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2013.07.1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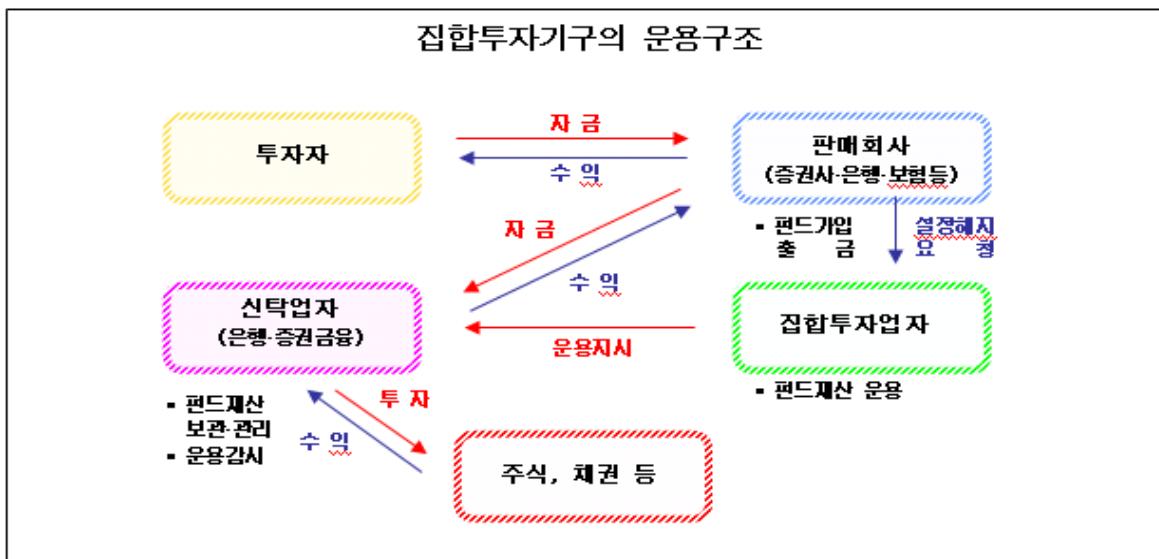
(단위 : 억원)

| 통화 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 동 산 | 특별자산 | | 단기대 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 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원화 | - | - | - | 268 | - | - | - | - | - | 3 | 0 | 271 |
| - | - | - | - | (99.05) | - | - | - | - | - | (0.94) | (0.01) | (100) |
| 합계 | - | - | - | 268 | - | - | - | - | - | 3 | 0 | 271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 | |
|----------|--|
| 회사명 | KTB 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연락처 : 02-788-8400, www.i-ktb.com) |
| 회사 연혁 | 1999. 9. 11 회사 설립(자본금 70 억원) 1999. 9. 22 금융감독위원회에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 1. 18 자본금 증자(자본금 150 억원) 2000. 1. 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
| 자본금 | 166.2 억원 |
| 주요주주현황 | KTB 투자증권(주)(90.12%) |

나.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증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계정과목 | '12.04.01 ~'13.3.31 | '11.04.01 ~'12.3.31 | 계정과목 | '12.04.01 ~'13.3.31 | '11.04.01 ~'12.3.31 |
| 유동자산 | 37,916 | 38,226 | 영업수익 | 17,705 | 26,004 |
| 고정자산 | 6,875 | 7,796 | 영업비용 | 14,377 | 17,525 |
| 자산총계 | 44,791 | 46,022 | 영업이익 | 3,328 | 8,479 |
| 유동부채 | 994 | 1,033 | 영업외수익 | 139 | 186 |
| 고정부채 | 0 | 0 | 영업외비용 | 570 | 1,614 |
| 부채총계 | 994 | 1,033 | 경상이익 | 2,897 | 7,051 |
| 자본금 | 16,620 | 16,620 | 특별이익 | - | - |
| 잉여금 | 26,987 | 28,180 | 특별손실 | - | - |
| 자본조정 | 190 | 189 | 세전순이익 | 2,897 | 7,051 |
| 자본총계 | 43,797 | 44,989 | 당기순이익 | 2,132 | 5,408 |

라. 운용자산 규모

(2013.07.31 현재, 단위: 억원)

| 집합투자 기구종류 | 증권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MMF | 기타 | 총계 |
|--------------|--------|-------|--------|-------|-------|-------|-------|-------|-------|--------|
|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재간접 | | | | | |
| 수탁고 | 19,016 | 9,110 | 20,123 | 8,547 | 2,454 | 8,219 | 3,052 | 3,208 | 2,748 | 76,477 |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의 운용(지시)업무 일부를 아래의 스타일별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KTB자산운용(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업무를 위탁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두자신탁의 업무를 위탁 받는 집합투자업자]

(해당 펀드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구 분 | 대형가치 주식형 | 중소형가치 주식형 | 위탁 업무 |
|---------------|---|---|--|
| 회사명 운용전문인력 | 신영자산운용(주) | 한화자산운용(주) | - 운용 및 운용지시 - 운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운용에 부수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기타 업무 |
| | 허남권 본부장 | 이해진 상무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번지 신영빌딩 6층 (대표전화 : 02-2004-9500)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한화금융센터 63 50~52층 (대표전화 : 02-6950-0000) | |
| 회사 연혁 | 1996년 8월 1일 설립 | 1988년 4월 15일 설립 | |

- 주) 1. 운용의 위탁에 따른 위탁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위탁 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위탁 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2.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만료의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도 해지의사를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으로 하며, 당사 또는 위탁 집합투자업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30일 전까지 해지사실을 서면 통지함으로써(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음) 언제라도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 당사는 위탁 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합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사]

(해당 펀드 : KTB스타셀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
|----------|---|--|
| 회사명 | (주)마루투자자문 | 브레인자산운용(주) |
| 대표이사 | 김성우 | 박건영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대표전화 : 02-6676-90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277-5000) |
| 회사 연혁 | 2011년 10월 12일 설립 | 2009년 2월 24일 설립 |
| 홈페이지 주소 | http://maruia.co.kr | http://www.brainib.com |

주) 마루투자자문 : 제로인펀드투자자문 흡수합병 (합병등기일 : 2013년 7월 30일)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한국외환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729-0414) |
| 홈페이지 주소 | www.keb.co.kr |
| 회사연혁등 | 홈페이지 참조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신탁업자는 위의 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책임

신탁업자가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외환펀드서비스(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9층 (☎02-6714-4615) |
| 홈페이지 주소 | www.keb.co.kr |
| 회사연혁 등 | 2003. 4. 1. 설립 2003. 4. 30. 금융감독원 등록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 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 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펀드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KIS채권평가 | 에프앤자산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88 ☎02-399-34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번지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번지 ☎02-3215-14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번지 ☎02-721-5300 |

| | | | | |
|---------------------|---------------|-----------------------|----------------|-------------------|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www.kfr.co.kr | www.nicepricing.co.kr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 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는 관련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KTB자산 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i-ktb.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폐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위의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이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이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모펀드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의 (2)자산운용보고서의 (다)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4) 법 제247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ktb.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관련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 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준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증개회사 선정기준 | |
|------|-----------|---|
| 증권거래 | 주식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를 종합하여, 투자참고 항목(Sector별 Analyst Call, 리서치페이퍼, 기업탐방주선, 세미나, 스팟정보), 브로커능력 항목(매매체결 능력, 수도결제능력), 매매수수료 항목(매매시스템의 합리성), 기타 항목(요청자료의 응대 등)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 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 | 채권 등 | 분기별 평가점수에 의한 우수 거래증권사, 선물사 순위를 선정하여 거래하며 내부 평가기준에 의한 매니저별 채점방식에 의합니다.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 거래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매매시에 최우선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
| 장내파생 | 주식관련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증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프로그램 보유여부,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 | 채권관련 | 거래대상증권사는 국내외증권사 및 선물증개회사를 종합하여, 매분기별 브로커능력 항목(체결의 신속성, 정확성), 매매수수료 항목(협의수수료), 투자참고 항목(리서치, 시황, 세미나), 업무지원능력으로 항목별 평가를 주식운용팀, 주식매매팀, 운영지원부서에서 개별 실시한 후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친 후 선정합니다.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 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순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산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집합투자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관련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KTB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게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KTB 스타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 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해당사항 없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 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